

# 「2025년도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제 안 요 청 서**

2025. 01.



# 목 차

│. 사업안내
1. 사업개요0
2. 추진배경 및 필요성0
3. 사업범위 02
4. 기대효과
Ⅱ. <b>대상업무 현황</b>
1.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현황 ···································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2. 추진 체계 0년
3. 추진 일정
4. 추진 방안
Ⅳ. <b>제안요청 내용</b>
1. 제안요청 개요
2. 제안요청 내용01
가. 요구사항 구성01
나. 요구사항 목록
다. 요구사항 상세12

# ∨. 제안안내

	1.	입찰방식	51
		가. 사업자 선정방식	51
		나. 계약(입찰) 방식	51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51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53
	3.	제안평가 및 협상 방법	55
		가. 평가방법	55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56
		다. 제안설명회 개최	56
	4.	제안사 유의사항	57
		가. 제안사 준수사항	57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58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59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60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60
		바. 기타사항	60
1/1	ILT	아니 자서기즈	
۷۱.		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61
		가. 제안서의 효력	61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61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63
		가. 붙임	65
		나. 별지서식	113

# │ 사업안내

## 1. 사업개요

- O 사 업 명 : 2025년도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O 사 업 비 : 금1.053.4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 1) 사후원가검토 항목: 내부 인건비 외 외부 지급 비용
  - 2) 사후원가검토 방법: 세부 항목별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
  - 3) 발주사가 지정하는 경우 전문업체를 통해 증빙하며 비용은 발주사 부담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O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 서울관광 공식 홈페이지(visitseoul.net, 한·영·중간·중번·일·러·말 등 7개 언어) 및 모바일 앱(한·영·중간·중번·일 등 5개 언어)을 통한 관광정보 제공
-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sto.or.kr) 및 콘텐츠관리시스템(CMS)
- 서울관광 아카이브(archive.visitseoul.net) 및 아카이브 솔루션
- O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관리
- 서울관광 아카이브(archive.visitseoul.net) CMS 재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 O 서울관광 API 개발자센터 신규 구축

# 3. 사업범위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대상 서비스	● 서울관광 공식 홈페이지(visitseoul.net) 및 콘텐츠관리시스템(CMS)  - 한국어, 영어, 중국어(간체, 번체), 일본어, 러시아어, 말레이어(7개)  ● 서울관광 모바일 앱(AOS, iOS)  - 한국어, 영어, 중국어(간체, 번체), 일본어(5개)  ●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sto.or.kr) 국/영문 및 콘텐츠관리시스템(CMS)  ● 서울관광 아카이브(archive.visitseoul.net) 국/영문 및 아카이브 솔루션  ● 서울관광 아카이브 CMS 재구축
서비스 운영		<ul> <li>서울관광 API 개발자센터 신규 구축</li> <li>기구축된 서울관광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 지원</li> <li>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재단 프로모션, 온·오프라인 이벤트, 공모전 등 수시 업로드 요청 건 운영 지원</li> <li>재단 내외부 협력에 따른 프로모션 기술 지원</li> <li>비짓서울 CMS를 활용하여 개발된 홈페이지 지원</li> <li>한류관광, 도보관광, 등산관광, 다누림관광, 우수관광상품 개발지원, 관광 스타트업 등</li> <li>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안정적 운영·관리</li> </ul>
	인프라 소프트	<ul> <li>● 클라우드에서 운영 중인 테스트 서버 운영 및 변경 관리</li> <li>● 기타 24시간 365일 서울관광 정보의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li> <li>○ 기 사용중인 WEB/WAS SW 유지보수 계약</li> </ul>
	웨어 성과관리 지원	○ 외부 연계 서비스 라이센스 갱신 및 유지 관리 ● 성과관리, 추진실적 수시보고 등
시스템 유지보수	시스템 운영	<ul> <li>시스템 운영관리 :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개발</li> <li>Front 오류, 기능 개선 (Web, App)</li> <li>CMS 유지보수 및 오류, 기능 개선</li> <li>웹 표준 준수 및 웹 취약점 점검</li> <li>모바일 앱 보안성</li> <li>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준수</li> <li>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이행 조치</li> <li>내·외부 연계 서비스 유지관리</li> <li>최신 패치 적용, 홈페이지 속도 개선 등 성능개선 지원</li> <li>검색 운영 및 유지관리</li> <li>SEO 최적화 가이드 적용</li> <li>웹 접근성 준수 (기능)</li> </ul>

IA, UX개선 : 메뉴, 페이지 추가
컨설팅         •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 최적화 UI/UX 컨설팅           • 클라우드 인프라 최적화를 위한 운영 컨설팅           보안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준수           관리         •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물리적 보안관리 준수           프로젝트         • 체계적인 방법론에 의한 프로젝트 및 산출물 관리           관리         • 업무 관련 각종 보고회의 및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강화
● 클라우드 인프라 최적화를 위한 운영 컨설팅  보안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준수 관리 ●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물리적 보안관리 준수 프로젝트 ● 체계적인 방법론에 의한 프로젝트 및 산출물 관리 관리 ● 업무 관련 각종 보고회의 및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강화 ● 사업주관가 및 이체관계가(서울시 등)이 위향한 시스템 사용 및 서비스
보안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준수           관리         •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물리적 보안관리 준수           프로젝트         • 체계적인 방법론에 의한 프로젝트 및 산출물 관리           관리         • 업무 관련 각종 보고회의 및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강화           • 사업증과가 및 이체관계계(서우시 등)이 의화한 시스템 사용 및 서비스
관리       ●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물리적 보안관리 준수         프로젝트       ● 체계적인 방법론에 의한 프로젝트 및 산출물 관리         관리       ● 업무 관련 각종 보고회의 및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강화         ● 사업증과가 및 이체관계자(서우시 등)이 의화한 시스템 사용 및 서비스
프로젝트       ● 체계적인 방법론에 의한 프로젝트 및 산출물 관리         관리       ● 업무 관련 각종 보고·회의 및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강화         ● 사어즈과가 및 이체관계자(서우시 등)이 의화한 시스템 사용 및 서비스
관리 ● 업무 관련 각종 보고회의 및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강화 ■ 사어즈과가 및 이체관계기/서우시 등)이 의화하 시스테 사용 및 서비스
■ 사어즈라지 미 이체과게기/서우시 드)이 의화하 시스템 샤요 미 서비스
기어   ● 사업주관자 및 이해관계자(서울시 등)의 원활한 시스템 사용 및 서비스
사업   " 이 비가 된지 못 위에 된게 자연할지 않는데 전달한 지수 및 사람은
관리 관리와 학습성장을 위한 교육지원
<b>프로젝트</b> ● 사업주관자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 기술 협의 등 지원
<b>지원</b> ● 대내외 고객 문의 상담 및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지원
• 인력 및 수행사 교체 시 신속·정확하고 체계적인 업무인수인계 절차와
방법을 통한 원활한 운영・유지관리 업무수행
•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품질 유지관리
• 웹표준 및 웹접근성 지침 준수를 통한 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 사업수행 시 관련 기술 표준. 업무지침 및 가이드, 법, 제도 등의
품질 인중 준수 및 준용
관리   관리   - ' / - '
• 국정원 보안지침 등 서울시 대내외 관련 지침 및 규정 준수
• 재단 관련 부서 운영시스템 및 보안 사항 주기별 모니터링 협조 및
결과 반영
유지관리 • 운영·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업무별 투입인력 자격 요건 준수
'oja '  • 운영을 위한 기술 보유 요선 순수
인력 ● 투입인력 근무장소, 복무조건, 배치(재배치) 및 교체 요건 준수 데이터베
<b>운영</b> 이 <b>스관리</b> ● 사용자 관리 및 접근제어, DB 모니터링, 성능 튜닝 및 최적화 관리
자(DBA) ● 백업 및 복구, 스키마, 장애, 데이터베이스 보안 관리 및 문서화·작업 보고
이렇
이수이게 • 호페이지 모바의 앤 유영언무 매뉴엄하
기타   지원   • 2026년 운영사 변경 시 인수인계 업무(계약 종료 후 1개월)

※ 본 과업에 포함된 SW 라이선스 갱신, 외부 솔루션 연계 비용 등 외부 지급 비용(12개월분)은 사업비에 포함되며 수행사가 지급하여야 함. ('24년 기준 비용은 제안사의 요청 시 별도 제공)

# 4. 기대효과

- O 서울 관광객 대상 안정적 관광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만족도 제고
- O 서울관광 홍보 및 마케팅 등 핵심업무 집중을 위한 IT 시스템 안정화

# Ⅱ 대상업무 현황

## 1.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현황

O KT 클라우드(kt cloud) 인프라 활용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O 소프트웨어

연번	물 품 명	수량
1	Tibero *********	2
2	Apache / Tomcat	4

#### O 연계 솔루션

연번	서비스 내용	비고
1	다국어 대중교통정보 제공(버스, 지하철 교통정보, 경로안내 등)	
2	날씨 콘텐츠	
3	이미지 압축 솔루션	
4	비짓서울 검색엔진	
5	웹 에디터	
6	서울관광 아카이브 솔루션	
7	트립어드바이저 POI 리뷰 서비스	
8	소셜로그인 및 댓글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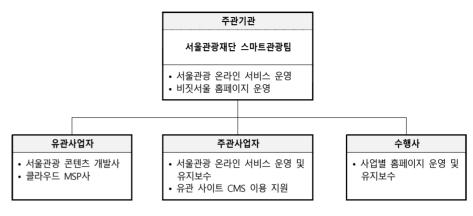
# Ⅲ 사업추진 방안

# 1. 추진목표

○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비짓서울,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서울관광 아카이브) 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관광정보 제공

# 2. 추진체계

O 추진조직 구성



#### O 추진조직별 역할

	구분	세부내용
관리	서울관광재단 스마트관광팀	사업총괄관리     사업계획서 수립 및 위탁사업자 선정     사업단계별 결과 및 추진상황 보고     과제수행 관리 및 결과 평가
	서울관광재단 경영지원팀	• 홈페이지 도메인 관리 • 보안관리
수행	주관사업자	• 사업수행 및 진도보고 • 유관사업 홈페이지 운영·개발 시 CMS 기술지원
활용	서울관광재단 내 연계 서비스	서울관광재단 내 연계 서비스

## 3. 추진일정

구분						202	5년					
丁正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 발주/입찰공고												
- 계약 입찰 공고												
- 심사 및 계약체결												
• 서울관광 온라인 서 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 서울관광 아카이브 CMS 재구축												
• 서울관광 API 개발자센터 구축												
• 보고회 개최 (착수/중간/완료)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4. 추진방안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O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함

# □ 제안요청 내용

## 1. 제안요청 개요

- 가. 본 제안요청서는 '2025년도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문서로, 서울관광재단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나. 제안 업체는 이 목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 시스템 관리 등의 전문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업무실적 경험이 풍부하고 시스템의 운영관리, 유지

보수, 장애관리(장애 예방・인지・조치・보고),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다.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제안사의 추진 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라. 서울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기관 정책 사항(개인정보보호, 웹 페이지 보안, 웹 접근성, 정보전달 기능 개선 등), 법률 및 IT 기술변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 및 사용자 요구를 적극 수용해 빠른 시간 내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 마.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수행 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사와의 협의·승인 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다.
- 바.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추진방안과 제안 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상의 과업 및 제안내용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 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직접경비는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고 투입 인건비는 분리 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 2. 제안요청 내용

####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b>설 명</b> (요구사항 번호(ID) 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시스템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10
성능_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INT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1
데이터-DAR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8

요구사항 분류	<b>설 명</b> (요구사항 번호(ID) 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Data Requirement)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터스트-TER (TEst Requirement)	<ul> <li>도입 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li> <li>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li> </ul>	3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2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ul> <li>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li> <li>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li> </ul>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 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11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9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사항 등)	8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15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1			
컨설팅-CSR (ConSulting Requirement)	• 정보화사업의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요구사항	1			
합 계					

#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CR-001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상용SW 및 솔루션 계약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SFR-001	서울관광 표준콘텐츠 관리시스템 분리 이관
	SFR-002	서울관광 표준콘텐츠 관리 전용 CMS 구축
	SFR-003	서울관광 API 개발자센터 신규 구축
	SFR-004	표준콘텐츠 활용을 위한 오픈 API 구축
기능요구사항	SFR-005	서울관광 아카이브 CMS 재구축
(SFR)	SFR-006	비짓서울 중국어권 서버 분리 및 네트워크 환경 개선
	SFR-007	한류 콘텐츠 페이지 개선
	SFR-008	테마별 콘텐츠 생성 및 원클릭 예약 서비스 개발
	SFR-009	예약 플랫폼 API 연동
	SFR-010	비짓서울 앱(APP) 고도화
	PER-001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성능요구사항 (PER)	PER-002	시스템 정상 상태에서의 응답시간
, ,	PER-003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	INT-001	외부 시스템 연계 API
(111)	DAR-001	메타데이터 현행화
	DAR-002	데이터 표준화
	DAR-003	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데이터 요구사항	DAR-004	데이터 표준 관리
(DAR)	DAR-005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6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7	DB 유지관리
	DAR-008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
	TER-001	테스트 방안 수립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2	시험운영 방안 수립
	TER-003	주요기기 대상 테스트 실시
보안 요구사항	SER-001	구간암호화
(SER)	SER-002	보안지침 준수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2	DB 품질관리 계획
	QUR-003	성능 확보 및 시스템 시험 요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COR-001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 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COR-004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5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제약사항 (COR)	COR-006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COR-007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COR-008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앱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활용
	COR-009	모바일 앱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10	모바일 앱 검증 절차 준수
	COR-011	데이터 표준화 기준 준수
	PMR-001	성과지표 설정 관리
	PMR-002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PMR-003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4	SW사업정보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5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06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7	핵심인력 자격 요건
	PMR-008	사업총괄관리자(PM) 지정 및 상주
	PMR-009	SW공급자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지원
	PSR-003	하자보수 일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4	SW사업정보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SR)	PSR-005	웹 접근성 인증
	PSR-006	개발환경 구성
	PSR-007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PSR-008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MAR-001	서울관광 다국어 온라인 플랫폼 유지관리 대상
	MAR-002	서울관광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 공통사항
	MAR-003	연계 서비스(다국어 기반) 운영 및 유지보수
	MAR-004	서울관광 검색 운영 및 유지관리
	MAR-005	관광 유관사업 연동 운영 및 유지보수
	MAR-006	서울관광 모바일 앱 운영
	MAR-007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관광 아카이브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R008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유지관리
	MAR-009	서울관광 온라인 플랫폼 통합관리시스템(CMS) 운영 및 유지보수
	MAR-010	서울관광 모바일 앱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MAR-011	모바일기기 지원사항
	MAR-012	DB(Database) 지원사항
	MAR-013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MAR-014	유지보수 솔루션 도입
	MAR-015	대화형 관광안내 서비스 운영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유지보수 핵심인력 요구사항
컨설팅 요구사항 (CSR)	CSR-001	서울관광 아카이브 CMS 재구축으로 인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시 SEO 연동 및 최적화 방안 컨설팅

# 다. 요구사항 상세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	항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상용SW 및 솔루션 계약		
요구사	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정의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상용SW 및 솔루션 2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울관	난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상용SW 유지보수	<u> </u>
		연번	물 품 명	수량
		1	Tibero *******	2
		2	Apache / Tomcat	4
		○ 서울관	난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연계 솔루션	
상세 설명	세부	연번	서비스 내용	
20	내용	1	다국어 대중교통정보 제공(버스, 지하철 교통정보, 경	로안내 등)
		2	날씨 콘텐츠	
		3	이미지 압축 솔루션	
		4	비짓서울 검색엔진, 아카이브 시스템 연계(6개월)	
		5	웹 에디터	
		6	서울관광 아카이브 솔루션	
		7	트립어드바이저 POI 리뷰 서비스	
산출	정보	○ 계약시	:	

# 2)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	항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서울관광 표준콘텐츠 관리시스템 분리 이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정의	현 시스템에서 표준콘텐츠 관리시스템 분리 이관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ul> <li>○ 현 시스템에서 표준콘텐츠 관리시스템 분리 구축</li> <li>○ 서비스에 최적화된 표준콘텐츠 관리시스템 구성</li> <li>○ 기존 서비스에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표준콘텐츠 DB 데이터 및 파일데이터 분리 이관 및 정합성 확보</li> <li>○ 시스템 분리 후에도 비짓서울 콘텐츠 신규 등록 및 기존 콘텐츠 수정 시표준콘텐츠 관리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 구성</li> <li>○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에 맞는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li> </ul>

산출	정보	O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번호		SFR-002
요구시	항 명	서울관광 표준콘텐츠 관리 전용 CMS 구축
요구사형	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서울관광 표준콘텐츠 관리 전용 CMS 구축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표준 분류체계 기반의 콘텐츠 관리 - 대외 개방에 따른 다양한 관광 관련 콘텐츠를 체계적이고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표준 분류체계 개선 및 운영가이드 현행화 - 사용자가 작업하기 편한 환경 제공 ○ 기존 표준콘텐츠 관리 기능 분리 이관 및 기능 확장 ○ 서울관광재단 내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계정관리 기능 개발 - 사용자가 표준콘텐츠 조회·검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 ○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에 최적화된 구조로 설계
산출	정보	O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	항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		서울관광 API 개발자센터 신규 구축
요구사	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표준콘텐츠 개방을 위한 API 개발자센터 신규 구축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오픈 API 사용자 등록을 통한 API 키 발급 관리 - 오픈 API 사용자 신청승인 - 사용자 인증을 위한 API 키 관리 및 발급 ○ 오픈 API 사용자 가이드 제공 - 사전 준비사항, API 명세, 개발가이드, 검수가이드, 샘플코드, 오류코드 등 ○ 표준콘텐츠 대외 개방 직관적인 통계 기능 개발 - API 이용 및 데이터 활용 통계, 실시간 모니터링 등 ○ 연계 대상 - 재단 내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는 확장성을 고려해 설계
산출	정보	O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	항번호	SFR-004
요구시	항 명	표준콘텐츠 활용을 위한 오픈 API 구축
요구사	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표준콘텐츠 활용을 위한 오픈 API 구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API 키 기반 표준콘텐츠 리스트 조회 ○ API 키 기반 표준콘텐츠 다운로드 ○ 오픈 API를 통한 표준콘텐츠 개방을 위해 인터페이스 및 교환데이터 표준, 서비스 URL, 오퍼레이션 명세(예. Request Parameter, Response Message) 지원 ○ 서로 다른 통신방식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도록 인터페이스 및 교환 데이터 표준 제시(예. 인터페이스 표준(REST API), 교환데이터 표준(XML, JSON)) ○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변경 시 장애나 오류 없이 서비스 구현 이 비짓서울 콘텐츠 배포 실시간 적용
산출	정보	O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	항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		서울관광 아카이브 CMS 재구축
요구사학	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서울관광 아카이브 CMS 재구축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서울관광 아카이브 CMS 재구축 - 아카이브 CMS 서버 및 관리시스템 분리 - 시스템 전반적 통계 및 대시보드 구축을 통한 모니터링 기능 연계 -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발 - 통계 기능 개선 ○ 데이터 이관 및 기존 시스템 연계 - 기존 콘텐츠의 신규 시스템 이관 및 데이터 정합성 검토 - CMS 및 콘텐츠 데이터 이관 및 SEO 밸류이전 - CMS 기능별 홈페이지 프론트 연계 ○ 검색 기능 고도화
산출	정보	O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	·항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		비짓서울 중국어권 서버 분리 및 네트워크 환경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정의	비짓서울 중국어권 서버 분리 및 네트워크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비짓서울 중국어권 서버 분리 및 네트워크 환경 개선 - 중국 글로벌 웹페이지 로딩 속도 문제 해결 - 중국 국경 네트워크 필터링으로 인해 차단되는 콘텐츠 문제 해결 - 웹사이트에 검열되는 콘텐츠, 연계 사이트 검토 및 개선 - 비짓서울의 다양한 콘텐츠의 안정적인 제공 ○ 비짓서울 중국어권 리뉴얼 및 성능 개선 - 유튜브, 구글, 네이버 등 검열 대상 서비스 요소 담당자 협의 후 사전 제외

		- 이미지 최적화
산출	정보	O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	항번호	SFR-007
요구시	항 명	한류 콘텐츠 페이지 개선
요구사	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한류 콘텐츠 페이지 개선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한류 콘텐츠 보강 - 한류 공연정보에 최적화된 복합 콘텐츠 제공 및 서비스 개선 - CMS 에디터를 통한 다양한 정보 제공 ※ 상세 내용은 재단과 협의
산출	정보	O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	·항번호	SFR-008
요구시	<b>항</b> 명	테마별 콘텐츠 생성 및 원클릭 예약 서비스 개발
요구사	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테마별 콘텐츠 생성 및 원클릭 예약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테마별 콘텐츠 생성 - 스포츠, 자연체험, 문화체험 등 특정 테마별 콘텐츠 생성 ○ 원클릭 예약 서비스 개발 - 추천 콘텐츠 테마에 따른 테마여행 상품들을 패키지로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및 시스템 연동
산출	정보	O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	·항번호	SFR-009
	항번호 <b>-</b> - - - - - - - - - - - - - - - - - -	SFR-009 예약 플랫폼 API 연동
요구시		
요구시	-  항 명	예약 플랫폼 API 연동
요구시	하 명 항 분류	예약 플랫폼 API 연동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		비짓서울 앱(APP)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비짓서울 앱(APP) 고도화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AI 챗봇 연동 서비스 - 추천경로 생성 및 테마 등록 ○ 푸시(push) 서비스 - 이용안내, 할인쿠폰 등 푸시(push) 서비스 제공
산출정보		O 단계별 산출물

# 3)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정의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시간 등 성능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함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함 ※ 단, 홍보·쇼핑몰 등 웹사이트 특성에 따라 3MB를 초과할 수 있음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웹사이트 구축 - 첫페이지 등 주요 페이지 응답속도는 3초 이하 권장 ○ 웹사이트 구축 후 부하 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 처리량, 자원 사용량 등 성능 시험 ○ 최적화 분석대상, 분석주기, 분석방법 등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준에 미진한 사항은 개선	
산출정보		O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속도 측정결과서, 성능측정결과서	

요구사항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		시스템 정상 상태에서의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정의	기능 수행 지연에 대한 사전 경고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대한 응답결과를 3초 이내에 화면에 보여주어야 함 ○ 주요 국가에서 웹사이트 접속 시 3초 이내로 메인화면이 표출되어야 함

<b>산출정보</b> ○ 주요 국가 응답속도 측정결과서
--------------------------------

요구사항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정의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목표 정의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일일 배치 업무는 10분 내 처리되어야 함 ○ 월 배치 업무는 1시간 내 처리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는 적용 되지 않음
산출정보		O 성능시험결과서

#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INT-001
요구사항 명		외부 시스템 연계 API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외부 시스템 연계 API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연동 개발 규격서 ○ 서울관광 공식 홈페이지 www.visitseoul.net 연동 ○ 서울관광안전지수, 트립어드바이저,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등 API로 연계되는 서비스에 대한 운영·관리
산출정보		O 연동 운영(개발) 결과보고

# 5)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 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 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 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요구사항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 DB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물리데이터 다이어그램(ERD)

요구사항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범정부 및 서울시 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ul> <li>○ 범정부 표준 준수</li> <li>-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li> <li>-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li> <li>-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을 준수하여야 함</li> <li>○ 서울시 표준을 준수</li> <li>-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li> <li>-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li> <li>-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li> <li>○ 메타데이터의 원활한 검색을 위해 개별 시스템의 모든 DB테이블 및 컬럼명은 한글화 할 것</li> </ul>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 사전, 도메인사전),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한글화된DB명세 서 및 표준적용결과서)

요구사항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O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매뉴얼

요구사항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 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O 데이터(표준, 구조, 연계, 품질) 관리체계서

요구사항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 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 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항목 정의서
------	----------------------------------

요구사항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		DB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DB 유지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CMS 내 관리자 유형별 데이터 관리 - 관리자 등급 구별하여 유형별로 데이터 관리 기준 구분 ○ 외부 데이터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체크하고, 그 로그를 유지 해야 함 ○ DB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DB 성능을 개선 해야 함(개인정보 테이블의 암호화 고려)
산출정보		0 -

요구사항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DB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애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관련 가이드, 매뉴얼 등 참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O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

# 6)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테스트 방안 수립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각 단계별 테스트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관련 정보시스템 과의 연계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단계별 시험계획서를 작성하되, 시험인력, 시험 데이터, 시험 절차 및 방법, 시험 일정 및 주기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		O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		시험운영 방안 수립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테스트 운영방법 및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험운영은 사업자 간의 협의에 의해 기간과 내용을 정함 ○ 시험 운영 결과 오류 사항 등을 보완하여야 하며, 과업 기간 내 보완 완료 되어야 함 ※ 보완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0 -

요구사항번호		TER-003
요구시	항 명	주요기기 대상 테스트 실시
요구사	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주요 모바일기기 대상 테스트 실시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방한 주요 국가 대상 주요기기 테스트 실시 - 영문: 미국, 영국, 아시아국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 중문간체: 중국 / 중문번체: 대만, 홍콩 - 국가별 주요 모바일 기기 확인 및 테스트 - 최신 주요 스마트 기기 출시 즉시 테스트(AOS, iOS)
산출	정보	O 테스트 결과서

# 7)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구간암호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이용자 및 서버 구간 정보 전송 시 암호화 조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PC부터 웹서버 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 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 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0 -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보안 관련 규정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ul> <li>○ 사업자는 서울시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li> <li>○ 사용자 접근제어</li> <li>- 시스템은 사용자의 업무 권한에 따라 데이터의 접근 수준을 구분해야 함</li> <li>- 시스템은 사용자가 일정 회수 이상 로그인 정보가 틀린 경우 접근을 제한해야 함</li> <li>○ 데이터 무결성</li> <li>- 시스템은 인가된 사용자가 외부에서 사용자 정보를 변경하려고 할 때 감사추적을 해야 함</li> <li>- 시스템은 이용자 ID, 이용 시간, 조회 내용, 사용 현황 등의 조회 이력을 관리해야 함</li> <li>- 시스템은 데이터 변경이력과 데이터 접근 현황에 대한 로그 관리를 해야 함</li> <li>○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li> <li>- 시스템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li> <li>※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li> <li>-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해야 함</li> </ul>
산출정보		0 -

# 8)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품질관리 준수 일반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ul> <li>○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li> <li>○ 품질활동의 제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li> <li>○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li> <li>○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li> <li>○ 사업자는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야함</li> <li>-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li> <li>-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li> <li>- 개발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개발방법론을 적용하여 프로그램 개발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li> <li>-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li> </ul>
산출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시	·항번호	QUR-002
요구시	항 명	DB 품질관리 계획
요구사	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행정 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 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 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산출	정보	O 행정 DB의 데이터품질관리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요구사항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성능 확보 및 시스템 시험 요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서비스 성능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ul> <li>○ 서비스 성능 및 호환성 확보</li> <li>- 서비스 요청 시 기본적으로 3초 안에 응답 제공하여야 함(단, 통신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li> <li>- 모바일앱의 경우 2개 이상의 스마트폰 OS(IOS, Android)에서 지원되어야 함</li> <li>- 다양한 모바일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등) 환경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호환성 또는 운용성을 고려하여 개발</li> <li>- 이미지 또는 텍스트로 구성된 별도 콘텐츠를 동시 제공</li> <li>- 별도 외부 솔루션 연계를 포함하여 성능 및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함</li> <li>○ 단계별 시험계획 및 수행</li> <li>-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연계 데이터별로 시험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시험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li> <li>- 시험계획서에는 시험인력, 시험 데이터, 시험 절차/방법, 시험 일정 및 주기, 시스템 튜닝, 자료 연계 등을 포함하여야 함</li> <li>-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결과의 모니터링 및 시험결과를 계속적 반영하여(에러 조치, 불편 사항 보완)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li> <li>- 시험운영은 서울시가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와 보완 완료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 경우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함</li> </ul>
산출정보		O 데이터품질관리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9)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 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 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0 -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 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사업추진 시 공통 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1)를 검토하고, 제안사 관점 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12)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 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 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 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함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8]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 기재> ○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	--

요구사항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행정·공공 및 서울시 웹사이트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 규정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및 서울시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관련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방송통신표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정보보안과) - 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0 -

요구사항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웹사이트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 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https://www.kioskui.or.kr/index.do?menu_id=00000976) - 웹접근성 준수 증빙 서류 제출 - 제출주기: 상호혐의 후 최소 반기별 제출 - 제출서식: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서식 다운로드: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 비짓서울 7개 어권 및 재단(국/영문) 홈페이지 웹접근성 마크 획득 필요 ○ 서울시 정보접근성 진단 결과에 따른 품질인증 지원 및 결과에 따른 조치 - 진단 주체: 서울시 - 조사 기관: 웹접근성 심사 전문기관 (위탁운영)
산출	정보	O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웹접근성 인증마크

요구사항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웹사이트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웹사이트 구축 또는 개편 사업 추진 시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표준 (x)HTML 문법 준수, 표준 CSS 문법 준수   W3C Markup Validator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W3C CSS Validator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최신 웹표준 기술(HTML5 적용), 문자(한글)부호화 준수(UTF-8 적용),   제어기능의 표준 준수(DOM, ECMA-262 적용), 비표준기술제거(노플러그인 적용)   · 웹호환성 및 모바일 웹 호환성 확보   · 3종 이상(Chrome, Edge, Whale 등)에서 기능 호환성 확보,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 2종(Android, IOS) 운영체제 기본 설치 브라우저에서 PC 기능과의 차이,   화면과의 표시 차이를 검사   - 사업 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 결과서   ※서식 다운로드: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정기적(일정협의, 최소 반기별)으로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이트 수정 보완시(수시)에도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O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의뢰)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산출정보		O 취약점 점검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요구사항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앱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활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서울시 통합 웹(앱)로그 분석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서울시 웹(앱)서비스 신규 구축 및 리뉴얼 시 통합 웹(앱) 로그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방문자의 이용현황 분석을 실시해야 함 ○ 실시간 웹(앱)로그 수집 및 분석을 위해 정보시스템담당관(홈페이지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에 따라 스크립트(SDK) 적용 작업 실시 - 신규 서비스 오픈 전 또는 콘텐츠 추가.변경 시 모든 페이지에 필수 적용 - PC용웹/모바일웹/모바일앱 유형에 따라 특성에 맞는 스크립트(SDK) 적용 ○ 통합 웹(앱)로그 분석시스템 결과를 활용하여 웹(앱)사이트 개선 및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에 활용 - 실시간 분석 결과 및 방문자 이동경로 분석 등 자료 활용
산출정보		0 -

요구사항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		모바일앱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공공 및 서울시 모바일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모바일 서비스 사업 표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서울시 모바일 앱 서비스 업무추진절차

		○ 다음과 같은 모바일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구축하여야 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및 가이드라인(행정 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l·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m.egovframe.go.kr) -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 - 모바일 함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가이드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이 외의 모바일앱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산출정.	보	O -

요구사항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		모바일 앱 검증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서울시 모바일 앱 신규개발/재개발/기능개선 시 검증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보편적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모바일웹으로 구축해야 함 ○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앱에 특화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모바일앱 또는 하이브리드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음
산출정보		○ 앱 소스코드 검증결과서(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소스 보안검증 전문업체) - 앱 개편(또는 개선・변경범위가 클 때) 재검증 ○ 대시민용 공공앱 오픈 심의요청서(서울시 모바일 앱 서비스 업무추진 절차)

요구사항번호	COR-011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화 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공공 및 서울시 데이터 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DB 설계 시 표준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및 「서울시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용하여 행정 표준용어,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해서 수행해야 함 ○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 (LDAP)연계 표준을 준용함
산출정보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11조 참고 작성

# 10)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성과지표 설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ul> <li>○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ul> <li>상품공급수, 판매목표수, 홈페이지 방문수 등 제시</li> </ul> </li> <li>○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li> <li>○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 확정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li> <li>○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 (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li> <li>○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li> </ul>
산출정보		○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성과측정결과서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사	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산출	정보	○ 교육이행확인서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SW개발·유지보수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ul> <li>○「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관리대상산출물(테일러링 내역서)을 등록하여야 함※확정시관리대상산출물등록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사업 수행 시,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관리대상 산출물의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사항등의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여야 함</li> <li>○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li> <li>○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과정상에서의 문제점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li> <li>○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 협의 조정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li> <li>○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li> </ul>
산출정보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주간/월간보고서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SW사업정보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직접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정보, FP정보(개발: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시업 종료(검수)시): 사업정보, FP정보(개발: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사업정보, P한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 필요,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 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 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주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신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확보 등)를 의미  ○ SW사업정보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제안서 명시) ○ SW사업정보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SW사업정보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 시 준수사항(사전승인,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통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위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제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하함.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 (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정정선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하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산출내되어 보험)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병보, 증명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입찰참가 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ul> <li>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 초과 금지</li> <li>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li> <li>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제출</li> <li>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li> <li>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li> </ul>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ul> <li>하도급사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li> <li>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li> <li>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li> <li>이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서류</li> <li>-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li> </ul>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ul> <li>※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li> <li>○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서류</li> <li>-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li> <li>※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li> </ul>

요구사항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	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참조)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은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참조) - EA현행화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참조) - SW사업정보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참조, 해당 시 제출)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 등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핵심인력 자격 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핵심인력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핵심인력의 이력 및 자격 증명서류 제출

		○ 계약 기간 중 통보된 개발요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단, 퇴직 등의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될 요원의 명단 및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사업기간 중에 본 사업과 관련 없는 업무는 할 수 없으며,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협의하여 교체 및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0 -

요구사항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		사업총괄관리자(PM) 지정 및 상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유지관리 총괄사업관리자(PM)의 지정 및 상주 요건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총괄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참여지분율이 제일 높은 회사) 소속이어야 함 ○ 사업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총괄관리자(PM) 및 필요 인력의 업무 장소는 협의를 통해 효율·효과적인 사업수행에 도움 되는 장소로 발주사와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		0 -

요구사항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		SW공급자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SW공급자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주관사업자를 전체 사업의 통합사업자로 하며, 시스템통합사업자는 발주기관, S/W사업자(SW공급자) 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향후 S/W 사업자 간 업무 이행 및 책임소재에 있어 조정사항 이행확약서 등을 작성 - 통합 사업관리(공정, 품질)를 수행(S/W 사업까지 총괄관리) - 통합테스트 및 통합운영방안 수립 및 수행(S/W 포함) ※ S/W 사업자의 검수는 통합사업자 1차 검수를 거쳐 발주기관에 요청 - 사업간 업무영역 및 인계사항, 입주기관 협의 등 총괄 조정을 수행 ○ 제안사는 시스템통합사업자로서 SW공급자와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ul><li>사업자 간 책임 및 역할분담표, 상호협약서, 조정사항 이행확약서</li></ul>
	3 THAT E THE X TEELLER, SELECT, 10 TO 10 TO 11

# 11)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 및 사용자(관리자 및 일반사용자) 교육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운영자가 변경된 후 1개월 내에 교육 이행 후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함 시스템 운영 및 예방점검 방안 - 발생 가능한 장애 목록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등 ○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교육대상(일반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등 ○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 일정 및 장소, 세부내용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교육훈련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정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지원 계획을 상세히 제출하고 사업종료시 확약해야 함 - 기술지원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지원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ul> <li>○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지원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li> <li>○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li> </ul>
산출정보		O 기술지원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ul> <li>○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li> <li>○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li> <li>○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li> <li>○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li> <li>○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li> <li>○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li> </ul>
산출정보		○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요구사항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SW사업정보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X F IJI	정의	SW사업정보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산출정보	O 운영성과측정 데이터

요구사항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		웹 접근성 인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정의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ul><l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을 통해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하여야 함</li></ul>
산출정보		O 웹접근성 품질마크획득관련 증서

요구사항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		개발환경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정의	개발환경 구성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발주사와 제안사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별도의 개발환경을 구성하고 테스트 완료 후 실제 운영 장비에 이관할 것
산출정보		0 -

요구사항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 운영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운영시스템 구축 완료(또는 운영 유지관리)시 시스템 운영 절차 및 장애시 처리 방안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방형 API 사용 시 안정적인 운영 방안 제안 필요
산출정보		O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방안

요구사항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ul> <li>○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li> <li>○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li> <li>○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li> <li>○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li> <li>○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li> <li>○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li> </ul>
산출정보		○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12)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서울관광 다국어 온라인 플랫폼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정의	유지관리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서울관광 다국어 온라인 플랫폼 - WEB : 서울관광 홈페이지(반응형웹) (http://www.visitseoul.net) - APP : 서울관광 모바일 앱(아이폰・안드로이드폰 2종) - CMS : 콘텐츠관리시스템 ※ 단위사업별 대상언어 및 수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O 데이터 연계	난관광, 다누림관광, 우	> 지원 수관광상품 개발지원, 관광 스타트업 등 너 연계(API,DB) 현행화 및 관리
	구 분	연동방식	운영사
	도보관광예약서비스	DB	관광인프라팀
	숙박정보	DB	호텔스컴바인
	평점 및 리뷰	API	트립어드바이저
	지도경로 정보	API	아로정보기술
	날씨정보	API	K-Weather
	소셜댓글	API	LiveRE
	통계시스템	Log / 스크립트	웹로그/구글
	서울관광안전지수	API	SKT
	── 서비스 연계 - 서브도메인 및 특별 대 - 연계 서비스 확장 요?		구성된 서비스 연계 지원 지원
산출정보	0 -		

요구사항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서울관광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정의	서울관광 다국어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ul> <li>○ 다양한 형태의 홈페이지 표출 화면 개발         <ul> <li>서비스 소개, 콘텐츠별 다양한 템플릿 형태 등</li> </ul> </li> <li>○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웹 표준 유지 및 강화 운영         <ul> <li>Visit Seoul 전어권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번체, 러시아어, 말레이어), 재단 홈페이지(국/영문)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제출</li> <li>수시로 변동되는 웹사이트 운영 관련 법・지침 적용</li> <li>보안취약점 제거(보완), SecureCoding</li> <li>응용 소프트웨어 결함 수정 및 장애 조치</li> </ul> </li> <li>○ 웹사이트 취약성, 웹접근성, 웹표준, 웹호환, 앱접근성 등 정기적 점검보완         <ul> <li>웹사이트 취약성, 웹접근성, 웹표준, 웹호환, 앱 접근성 등은 서울시 및 정부 지침에 따름</li> </ul> </li> <li>○ 상기 외 홈페이지 운영 시 발생하는 유지보수 기술지원         <ul> <li>사용자 요구사항, 운영환경, 정책변경, 업무개선, 이슈발생 등으로 인한 프로 그램 변경</li> </ul> </li> </ul>	
산출정보		0 -	

요구사항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연계 서비스(다국어 기반)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정의	내·외부 다국어 기반 연계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호텔 예약 서비스 연계 - 언어권별 호텔 검색에 대한 연계 운영 및 유지보수 - 호텔 예약 정보 바로가기 정보 연계 추가, 수정 - 추후 연계 방식 또는 연계 데이터 변동 시 연계 방법에 따라 추가 개발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평점 및 리뷰 정보 다국어 연동 관리 - 트립어드바이저에서 Visit Seoul에 적용된 리뷰 API 정보 연계 관리 - Visit Seoul 표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연계 관리 ○ 날씨정보 연계 데이터 유지관리 - 케이웨더(Kweather)와 실시간 연계되는 현재 날씨, 예보 날씨, 대기오염 정보의 연계 데이터 운영 및 점검 ○ 소셜댓글 연계 및 다국어 관리 ○ 서울시 통계로그 적용 및 관리 ○ 연계 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보 수정 지원 - 외부 연계 서비스 운영 도중 오류 발생 시 원인 파악 및 수정 진행 - 대상 : 트립어드바이저 등 ○ 기타 API 연동 요청사항에 대한 유지보수 개발지원	
산출정보		O 연계 시스템 정의서	

요구사항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서울관광 검색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정의	서울관광 온라인 플랫폼의 효율적·안정적 검색 운영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연관 검색어 등 검색어 자동완성 운영(국문/영문) ○ 영문 검색시 연관 정보 제공 강화 ○ 영문 검색 대소문자 인식 기능 개선 ○ 인기 명소, 추천 검색 운영 ○ 추천검색어, 인기검색어, 자동완성 사전 운영 ○ 검색창 자동검색 관리기능 운영 ○ 검색결과 카테고리 수정 및 관리 운영 ○ 신조어, 동의어, 금칙어 등 사전관리 운영 ○ 다국어 콘텐츠 이슈 대응 운영 ○ 추천콘텐츠 관리, 검색 우선순위 운영	

		○ 주요 명소 및 여행정보 키워드에 대한 테마검색 제공 - 테마 제작에 따른 모바일 최적화, 웹접근성, 웹호환성 준수 ○ 바로가기/테마 정보 현행화 - 업데이트 및 데드링크 등 바로가기/테마 정보 현행화 ○ 통합검색 서비스 강화를 위한 관련 업무지원
산출정보		0 -

요구사항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관광 유관사업 연동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광 유관사업 연동 및 서비스 운영·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다수의 다국어 기반 관광 유관사업 서비스 연동 운영 및 콘텐츠 관리 지원	
산출정보		O 연계시스템 정의서	

요구사항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서울관광 모바일 앱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정의	서울관광 모바일 앱 운영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서울관광 홈페이지 연계 데이터, 콘텐츠 운영 및 유지보수 - 서울관광 CMS와 연계된 콘텐츠 및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 필요시 외부 기관 및 서비스와의 콘텐츠 데이터 연계 모듈을 서울관광 모바일 앱에 맞게 정비 및 변경 관리 - 서울관광 관리시스템(CMS)과 연계한 콘텐츠 운영 표준화 제공 - 추후 서울관광 콘텐츠 정보 확장 시 연계 대상 추가 ○ 앱스토어(구글스토어, 앱스토어) 운영 및 관리 - 마켓별 계정관리 및 서비스 배포 관리 - 마켓별 다운로드 실적 및 주요 홍보성과 관리, 고객리뷰 분석 리포팅 - 스토어 리뷰 및 댓글 관리 ○ 모바일 OS 업그레이드에 대비한 WEB/APP 콘텐츠 호환성 지원 - 모바일OS(Android/iOS) 업데이트 버전 및 신형 단말기 지원/변경관리 예) iOS - IPv6, 푸시 메시지 등 OS 플랫폼 관련 API 변경 적용			
산출정보		O 모바일 앱 운영 실적			

요구사항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관광 아카이브 홈페이지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정의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관광 아카이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범위 -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국/영문) (https://www.sto.or.kr) -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CMS) - 서울관광 아카이브 홈페이지 - 서울관광 아카이브 CMS ○ 재단 홈페이지(국/영문) - 재단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CMS) -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CMS) - 홈페이지 콘텐츠 및 정보 현행화 - 서울관광플라자 대관투어예약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입찰공고(서울시 계약마당 '발주계획'api 연동) 유지관리 - 기타 기능개선 (※세부 사업범위 협의 진행) - 재단 SNS 이벤트 운영 지원 ○ 서울관광 아카이브(국/영문) - 안정적 유지관리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연 1회) - 통계 등 기타 기능 유지보수 (※세부 사업범위 협의 진행)			
산출정보		0 -			

요구사항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유지관리			
요구사학	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정의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모니터링 / 장애관리 - 장애 발생 시 인지, 보고, 조치, 사후 결과 보고 등 총괄관리 수행 - 시스템의 장애예방 점검, 장애조치, 시스템 환경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관광재단과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함 - 장애발생시 STO에 바로 통보하고, 빠른 시간 내에 장애복구를 위해 노력 하여야 함 -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으로 침해, 장애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서비스 장애시간 최소화로 장애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0 -			

요구사항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		서울관광 온라인 플랫폼 통합관리시스템(CMS)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정의	온라인 플랫폼 통합관리시스템(CMS)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CMS 운영 유지 - 서울관광 콘텐츠통합관리시스템(CMS) 운영·유지 보수 ○ CMS 통합검색 기능 개선 - 검색 범위 DB에 있는 모든 콘텐츠 검색이 가능한 설계 - 어권별, 제공 상태, 기간, 검색어 필드 값에 대한 검색 결과 제공 - 사용자 권한별 조회/수정/삭제 가능한 구조 ○ 사이트 관리 - 단위(마이크로) 사이트 생성 시 지원 - 메뉴설정 및 연결 관리 - 서브사이트/서브인덱스 등 페이지 관리 - 정적(JSP)페이지 작성시 업로드 및 연결 관리 ○ 콘텐츠 관리 - 콘텐츠별 메뉴/옵션/검색필터 추가 관리 - 에디터 사용에 따른 콘텐츠 코딩 지원 - 웹표준 및 접근성 검증 - 콘텐츠 작성에 유리한 웹에디터 개선 ○ 게시판 관리 - 목적에 맞는 게시판 유형 생성 및 연결 지원 ○ 프로그램 관리 - 신규 사이트 또는 기능 생성시 프로그램 생성 및 연결 지원				
산출정보		0 -				

요구사항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		서울관광 모바일 앱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정의	서울관광 모바일 앱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모바일 앱 (iOS, Android) 운영관리 지원 - 응용 소프트웨어 결함 수정 및 장애 조치, 접근성 및 호환성 개선 - 보안취약점 제거, SW 난독화, 모바일접근성 적용 - OS, WEB/WAS, 솔루션, API, 응용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지원 - 연계 서버에 관련된 장비 운영 지원 ○ 앱 운영 통계 수집 및 관리 ○ 시스템의 기능 변경, 새로운 기능, 메뉴 추가 등의 보완개발 ○ 타 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지원 ○ 다국어 사용자를 위한 언어 변경 관리 및 서비스 관리 - 모바일 사용자를 고려한 최적의 사용 환경 제공 -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각 UI/UX, 기능, 성능, 품질 개선 ○ 앱 버전 체크 및 푸시 알림 기능 관리 ○ Push 기능 관리 - 즉시 발송 Push에 대한 발송 확인 및 통계 운영 - GPS 기반 Push 발송 기능에 대한 발송 확인 및 통계 운영			
산출정보		0 -			

요구사항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		모바일기기 지원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정의	원활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바일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모든 모바일기기 및 무선인터넷 서비스 검수 규격 충족 - 스마트폰, 태블릿 등 무선인터넷 기반의 모든 모바일기기 지원 - 2개 이상의 모바일OS(iOS, Android) 필수 지원 - 다양한 모바일기기 화면 크기에 따른 서비스 유연성 제공 (국내 이용이 많은 제조사 3개 이상 단말기) ○ 다양한 모바일OS 버전 및 단말기(화면사이즈, 기기 특성 등)를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품질 테스트용 단말기를 사업 기간 내에 자체 확보하여 테스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함 ○ 모바일 특성에 따른 UI/UX 및 연동 지원 - 다양한 모바일OS 및 기기와 서비스 적합성 보유 - 특정 모바일기기 특성(제조사, OS버전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개발/지원			
산출정보		0 -			

요구사항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		DB(Database) 지원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정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DB(Database) 운영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DB 운영 관리 -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및 성능 지표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량, 디스크 I/O) 분석 ・ 테이블, 인덱스, 트랜잭션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잠재적 문제 감지 - 성능 튜닝 및 최적화 관리 ・ Query 성능 최적화 및 인덱스 튜닝 수행 관리 ・ 캐시 메모리, 블록 크기, 세션 파라미터 등 DB 파라미터 최적화 관리 ・ 실행 계획 분석 및 성능 저하 요소 식별 및 개선 - 백업 및 복구 관리 ・ 정기 데이터베이스 백업(풀, 차등, 증분) 및 백업 전략 수립 ・ 데이터베이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절차 수행 ・ 장애 대비 복구 테스트 및 데이터 무결성 확인 ・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및 패치 ・ 새로운 DB 버전 또는 패치 릴리스 적용 ・ 패치 전후 테스트 및 롤백 계획 수립 - 장애 관리 ・ 장애 발생 시 로그 분석을 통해 원인 파악 및 문제 해결 ・ 장애 보고서 작성 및 장애 복구 절차 정리 - 데이터베이스 보안 관리 ・ 데이터베이스 보안 관리 ・ 데이터 암호화, 접근 권한 설정, 감사 기록 관리 ・ 외부 접근 차단 및 데이터베이스 보안 규정 준수 - 문서화 및 작업 보고 ・ 데이터베이스 환경 설정, 장애 대응 절차, 백업 복구 전략 등 문서화 ・ 분기별 정기점검 및 정기정검 보고서 - 재단 요청에 의한 DBMS 구성, 할당, 삭제, 확장, 백업 등 운영 과업 수행 - 장애 발생 시 유지보수 계약 등을 활용한 신속한 장애 조치				
산출	정보	O 정기점검 보고서				

요구사항번호		MAR-013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정의	유지관리 내용 공통 적용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함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산출	정보	0 -

요구사항번호		MAR-014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 솔루션 도입				
요구사학	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정의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 도입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ul> <li>○ 아래 솔루션을 활용하여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li> <li>○ 다국어 대중교통정보 제공         <ul> <li>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길안내, 지하철 노선도 등을 다국어로 제공</li> <li>도보 길안내</li> </ul> </li> <li>○ 소셜로그인 및 댓글 서비스             <ul> <li>구글, 페이스북, 웨이보, 트위터, 네이버 등 소셜로그인 및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li> <li>살씨 정보 제공 서비스</li></ul></li></ul>				
산출정보		0 -				

요구사항번호		MAR-015
요구사항 명		대화형 관광안내 서비스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b>상세</b> 설명	정의	대화형 관광안내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챗봇 서비스 운영 관리 - 사용자 UI (모바일 Appliation) 변경 사항 적용 ○ 향후 고도화, 확장성을 위한 구현 방안 제시
산출정보		0 -

# 13)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 핵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곤	<b>!리인력 요구사</b> 항						
	정의	서비스 운영유지관리 업무별 투입인력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							
		- ; o 서	입인력별 최소 요? 계약일로부터 12. 울관광 홈페이지 : 예시)		j한 인력-	구성 등을	를 제시하	여야 함	
			업무활동	ITSQF 직무	투입 인원 (명)	투입 기간 (월)	투입률 (%)	투입 공수 (M/M)	
				IT프로젝트관리	1	12	50%	6	
		지원 업무		IT기획자	1	12	50%	6	
상세	세부 내용			IT품질관리	1	6	50%	3	
설명		0141		IT프로젝트관리	1	12	50%	6	
		일상 운영		응용SW개발	1	12	50%	6	
				데이터베이스 관리	1	6	50%	3	
		- 1 - 3 - 1 - 3	업무 역할에 적합합 핵심인력 구성시 변 젝트 개발경험이 영 용역수행책임자(PN 할 수 있는 전문 ( 핵심인력에 대한 7	다음과 같은 내용이 N 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로 사업과 관련된 개발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3 에는 반드시 제안사의 3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 한 핵심인력은 발주기관	 한 적절힌 에 직접 ( 포함하여( 주관사 소 전 기간 여 실적(	한 인력을 참여하였 야 함 소속으로써 참여하여 을 상세히	 투입시켜 거나, 유시 너 본 사입 야 함 }게 제시하	나 프로 법을 총괄 하여야 힘	
산출정보		0 -							

#### 14)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		서울관광 아카이브 CMS 재구축으로 인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시 SEO 연동 및 최적화 방안 컨설팅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SEO 최적화 방안 컨설팅에 관한 사항
	세부 내 <del>용</del>	○ 서울관광 아카이브 CMS 재구축으로 인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시 SEO 연동 및 최적화 방안 컨설팅
산출정보		O 컨설팅 보고서

# ∨ 제안안내

##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rightarrow$  제안서 접수  $\rightarrow$  제안설명 및 평가  $\rightarrow$  협상대상업체 선정  $\rightarrow$  협상실시  $\rightarrow$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O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나. 계약(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 는 자로서 아래 모두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사업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를 제출가능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12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1개 이상]에 등재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 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O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O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 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 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O 기타 유의사항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 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1개의 업체만 응찰하는 경우 재공고를 하지 않고 평가를 거쳐 선정할 수 있음. 단,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경우 재공고를 진행함

##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O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고방법 : 발주기관 홈페이지(http://www.sto.or.kr) 또는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O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O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제안서 제출> 서울관광재단 스마트관광팀 (송광현 대리) 서울관광재단 7층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서식 6] ② 가격입찰서 1부(가격제안서와 함께 제출) [별지서식 7, 8] ※ 가격제안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제안서 제출(가격 반드시 동일해야함) ③ 제안서 평가본 포함 11부 - 제안서 원본(보관용)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10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USB에 상호를 기재하여함께 제출할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최종 계약업체에한하여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검토를위해 사전배포될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출력해상도조정등)등 유의하여작성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관리확인서(분야: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명기후인감날인) ⑤ 「중소기업 범위 및확인에관한 규정」에따라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 1부 ⑥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에서정한직접생산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12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중 1개] 1부

- ⑦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⑧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⑨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 ⑩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 ①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본, 나라 장터발급본 등)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내)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
- ①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 및 명함 지참
  - (대리인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도 제출)
- ③ 기타 서류
  - 제안사 일반현황 1부 [별지서식 1]
  -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1부 [별지서식 3]
  - 용역책임자(PM) 이력사항 1부 [별지서식 5]
- ④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서식 21]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22]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④~⑩, ⑫, ⑭)의 서류 각 1부

#### O 제안관련 문의사항

- 제출서류 관련 : 경영지원팀 안상우 과장(02-3788-0822, danahn@sto.or.kr)

- 사업내용 관련 : 스마트관광팀 송광현 대리(02-3788-0820, hihello@sto.or.kr)

스마트관광팀 박효정 주임(02-3788-8132, jung29@sto.or.kr)

#### O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가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3. 제안평가 및 협상 방법

####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 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 1) 일반사항

- O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O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 제안사는 [별지서식 15]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서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O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를 미적용한 사업임

#### 3) 입찰가격 평가

O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 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 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고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O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O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용역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 자가 용역 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 만으로 평가함
  - ※ 단, 제안서 제출 시 지정한 PM이 갑작스런 퇴사 또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가 있는 경우, 제안서 제출 후에도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PM(최대 1회)을 변경할 수 있음
  -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하고 질의응답은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용역 총괄 책임자(PM)만 답변 가능함
  - ※ 발표 시 회사 이름은 거론하지 않아야 하며, 평가용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 파일에 회사명을 기입하지 않음(3회 이상 회사명을 거론할 경우, 발주기관은 발표를 제한할 수 있음)
  - ※ 용역책임자(사업PM)란 용역의 총괄 대표자를 의미함(제안사의 대표가 아님)
  - ※ 발표자가 용역책임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 당일. 본인의 재직증명서. 발

표자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 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제공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유역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 4. 제안사 유의사항

####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 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O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O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 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 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 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

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 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안내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 어 산출물을 반출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 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 1항제3호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1. 활용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 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예규 71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O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O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O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 바.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O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 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O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 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 Ⅵ 제안서 작성기준

## 1. 제안서 작성방법

####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O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 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 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 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혐의 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 1]제안서 목차" 및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 2]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 13]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 여 첨부할 것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 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
  - 제안서는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표지, 간지 포함)
  - 컬러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 [별지서식 11] 표지 사용
  -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O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O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O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 야 한다.
- O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8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표지는 [별지

서식 11]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 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 가. 붙임

- 1) 제안서 목차
- 2) 제안서 작성지침
-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8)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 10) 보안 서약서
- 11) 기술적용계획표
- 12) 과업심의위원회 결과서
- 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14)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 1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나.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 4) 사업실적증명원
- 5) 용역책임자(PM) 이력사항
- 6) 입찰참가신청서
- 7) 가격입찰서
- 8) 가격제안서
- 9) 서약서
-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11)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 12) 기술적용계획표(입찰참가자)
- 13)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14) 추가제안사항 요약
- 15)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 1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18) 위임장
- 19) 사용인감계
- 2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제안사제출용)
- 2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22) 합의각서

## [붙임 1]

# <u>제 안 서 목 차</u>

####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I. 제안사 일반현황
  - 1. 일반현황
  - 2. 주요 사업내용
  - 3. 주요 사업실적

#### Ⅱ. 제안개요

- 1. 제안배경 및 목적
-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3. 추진전략
-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6. 기대효과

#### Ⅲ. 기술 및 기능부문

-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2. 기타 기술사항

#### IV. 성능 및 품질부문

1. 품질확보방안

#### V.프로젝트 관리부문

- 1. 관리방법론
- 2. 일정계획
- 3. 형상관리
-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VI 프로젝트 지원부문

- 1.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 2. 기밀보안
- 3. 하자보증
- 4. 기타 지원사항

#### VⅡ. 기타

# <u>제 안 서 작성지침</u>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13
I.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 3
표. 제안개요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 전략	. 효율적인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의 추진방안을 위한 기술전략을 제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및 활용 방안과 관련된 사업 추진전략을 기술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PMR-001관련)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ul> <li>. 컨설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 기술</li> <li>• 컨설팅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기술</li> </ul>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 술	
皿.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지원부문에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IV. 품질부문		
1. 품질확보방안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가 있는 경우기재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방안 제시	
V.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 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 정 계 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 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3. 형 상 관 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VI.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 기 밀 보 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 자 보 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 시.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4. 기 타 지 원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각종 제약들의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제 시 예시) EA현행화 지원 방안,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검증 방안, 웹취약 성 검증방안 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등	
VII.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별지서식 14 (필요시)

주) 1.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붙임 3]

2025년도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2025년도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2025년도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u>기술능력 평가 90/100</u>과 <u>입찰가격 평가 10/100</u>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불임 4]와 같다.

-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 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

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 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 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 [붙임 4]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수행실적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20	붙임 5
	경기	기술 및 품질 인증	<ul><li>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li></ul>	6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ul><li>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심사 점수에 의한 평가</li></ul>	2		
기술 능력 평가		전략 및 방법론	<ul><li>대상사업의 이해도</li><li>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li><li>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확장성</li></ul>	15		
	_ 력	기술 및 기능	<ul> <li>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li> <li>(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내용의 적정성)</li> </ul>	20		
	정성적 평가	성능 및 품질	∘ 성능보증방안 ∘ 품질보증방안	10	70	붙임 6
		프로젝트 관리	<ul> <li>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li> <li>일정계획</li> <li>(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의 적정성 등)</li> </ul>	15		
		프로젝트 지원	<ul><li>교육훈련 및 기술이전</li><li>하자보수 및 비상 대책방안</li><li>기밀보안</li></ul>	10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7

평가항목

A. 수행실적 금액

B. 수행실적 건수

D. 기술 및 품질인증

E. 하도급계약의 적정

합 계

C. 경영상태

###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5천만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 유사사업 인정범위 :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또는 홈페이지 구축 사업
-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 담내용)만을 인정한다.
-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인정 실적 합산건수를 기준으로 점수비중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인정실적 합산(건)	7건 이상	5건 이상 ~ 7건 미만	3건 이상 ~ 5건 미만	1건 이상 ~ 3건 미만	1건 미만	<b>하</b>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배점	3	2.7	2.4	2.1	1.8	0

### A. 수행실적 금액

③ 평가대상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 사업 단일실적의 규모의 금액(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으로 평가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 가 요 소 (기준)

· 실적금액: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공고일 기준)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심사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점수에 의한 평가

∘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배점

3

20

평점방법

절대평가제

절대평가제

절대평가제

절대평가제

절대평가제

- ※ 유사사업 인정범위 :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또는 홈페이지 구축 사업
-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 담내용)만을 인정한다.
- @ 평가방법: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 (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100% 미만	60% 이상 80% <sup>~</sup> 미만	40% 이상 60% <sup>~</sup> 미만	40% 미만	<b>하</b>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배점	3	2.7	2.4	2.1	1.8	0

### B. 수행실적 건수

②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 C. 경영상태

#### ②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 5( <del>6</del> )
AAA	-	AAA	
AA <sup>+</sup> , AA <sub>0</sub> , AA <sup>-</sup>	A1	AA+, AA0, AA-	
$A^{+}$	A2 <sup>+</sup>	A+	
A <sub>0</sub>	A2 <sub>0</sub>	A0	5.0(6.0)
A <sup>-</sup>	A2 <sup>-</sup>	A-	
BBB <sup>+</sup>	A3 <sup>+</sup>	BBB+	
$BBB_0$	A3 <sub>0</sub>	BBB0	
BBB <sup>-</sup> ,BB <sup>+</sup> ,BB <sub>0</sub> ,BB <sup>-</sup>	A3 <sup>-</sup> ,B <sup>+</sup> ,B <sub>0</sub>	BBB-,BB+,BB0,BB-	4.75(5.7)
B <sup>+</sup> , B <sub>0</sub> , B <sup>-</sup>	B <sup>-</sup>	B+, B0, B-	4.5(5.4)
CCC <sup>+</sup> 이하	○ 이하	CCC+	3.5(4.2)

-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 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 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 한다.

출 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준용

#### D. 기업 및 품질 인증

② 평가기준 : 입찰 공고일 전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품 질인증 등을 획득한 경우 취득한 인증의 건수에 따라 절대평가

#### <부여점수>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점 수 (취득한 인증에 해당되는 점수의 합)	평점
		3점 이상	5.0 (6.0)
기업 및 소프트웨어	5.0	2점	3.0 (4.0)
관련 인증	(6.0)	1점	1.0 (2.0)
		0점 (서류 미제출)	0

#### <인증유형>

인중	점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증(SP)(2등급,3등급)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1등급, 2등급)	1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1
신기술인증(NET)	1
신제품인증(NEP)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x 인증)	1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1
시스템 관련 특허보유	1 (최대 3점)

#### E. 하도급 계약 적정성

#### ⑦ 평가기준

- 평가방법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항목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 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적정성 판단 점수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 - 평가기준

항 목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결과	점수비율	배점 2
하도급	95점 이상, 또는 하도급이 없는 경우	100%	2.0
계약의	90점 이상 ~ 95점 미만	80%	1.6
" ' '	85점 이상 ~ 90점 미만,	60%	1.2
적정성	85점 미만 (평가 자료 미 제출 포함)	0%	0

##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 □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준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대상사업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전략 및 방법론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5	15	
	적용기술 및 방법론	<ul><li>적용기술의 확장성</li><li>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li><li>개발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가능성 등</li></ul>	5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20	20	
712 7 710	1816 18	* 서비스 운영 및 시스템 관리 방안 제안			
		※ 기타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제안			
	성능확보방안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5		
성능 및 품질	품질보증 방안	<ul> <li>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li> <li>(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부합성과 구체성)</li> <li>사업자 품질보증 능력</li> <li>(품질보증 방안의 해당 사업 수행 적합 여부, 품질보증 관련 유효인증 보유 여부)</li> </ul>	5	10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15	
한圩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3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ul><li>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li><li>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li></ul>	5	10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7]

## <u>입찰가격 평가산식</u>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 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 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8]

##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1. 계약단계

- 가.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 2. 수행단계

-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 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3. 종료단계

-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군' 선택 후 검색
-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별표 1>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구 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 사업참여 제한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 위규자 및 직속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감독자 등 중징계 다. 비공개 항공사진 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 각 ○ 재발 방지를 위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조치계획 제출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 위규자 대상 특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혹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 • 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 위규자 및 직속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감독자 등 중징계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 재발 방지를 위한 중 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싴 조치계획 제출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 유지보수 시 워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 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十正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 누출금지 대상정보

-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 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0]

용역사업 착수시

#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_\_\_\_\_\_ 년 \_\_\_\_ 월 \_\_\_\_ 일부로 <u>2025년도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u> 보수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1. 본인은 2025년도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 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1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_\_\_\_\_\_년 \_\_\_\_월 \_\_\_\_일부로 <u>2025년도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u>지보수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1. 본인은 <u>2025년도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u>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 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 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업 체 명: 서 약 자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 월일: 서약 집행자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명 : (서명) 성 생년 월일:

용역사업 완료시

#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_\_\_\_\_\_ 년 \_\_\_\_ 월 \_\_\_\_ 일부로 <u>2025년도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u>지보수를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1. 본인은 2025년도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u>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u>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웤 년 일 체 명: 서 약 자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명 : (서명) 생년 월일: 서약 집행자 속 : 직 위 : (담당 공무원) 성 명 : (서명) 생년 월일:

용역사업 완료시

#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_	년	월	일누	부로 <u>2025년</u>	도 서울관	<u>광 온라인</u>	서비스	운영	및	f
지보수를	종료함에	있어 드	·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	너약합니다	-			

- 1. 본인은 2025년도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웍 년 업 체 명: 서 약 자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명 : 성 (서명) 생년 월일: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 월일:

[붙임 11]

###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5년도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작성일	2025년 1월

###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륜	○ 지능정보화 기본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전자서명법         ○ 전자정부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에규) ○ 행정건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구분	항 목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ο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잔	용계	획/결:	과	부분적용/
구 분	항 목			嘚	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ο 정보시스템은	?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abla				
등 서비스 0	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즈	<b>설용계</b>	부분적용/		
구 분	항 목		부분 적용	嘚	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V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V				
	- XML 1.0, XSL 1.0, XSLT 2.0	V				
외부 접근 장치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V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V			
서비스 전달	IPv4	V				
프로토콜	IPv6				abla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7	네요게	획/결과	a L				
구 분	항 목				-11.51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하고, 개발된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웹 서비스								
서비스 통합	- SOAP 1.2, WSDL 2.0, XML 1.0	V							
	- RESTful				V				

구 분	항 목		덕용계	부분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checkmark$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V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V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즈	성용계	획/결기	라	부분적용/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 적용	呼略	해당 없음	미적용시 시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수행하는 임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V						
	세부 기술 지침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abla						
	o 부가통신: VoIP										
네트워크	- Н.323				V						
	- SIP				V						
	- Megaco(H.248)				V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V						
	- UNIX				V						
운영체제 및	- Windows Server				V						
기반 환경	- Linux	V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V						
	- IOS				abla						

구 분		Z	덕용계	부분적용/		
	항 목	적용	부분 적용	<u>마점용</u>	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o DBMS					
	- RDBMS	V				
ell of elullot A	- ORDBMS				V	
데이터베이스	- OODBMS				V	
	- MMDBMS				V	
	- TSDBMS				V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V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V				
	o laaS					
클라우드 컴퓨팅	o PaaS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7 8	4 0	즈	부용계	획/결기	<b>과</b>	부분적용/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	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checkmark$									
	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abla									
말한다)로 「공공데이터 별도 테이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를 분리·설계, 품질확원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V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띠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 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을 요청하여야 한다.	abla									
과의 연계를	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 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I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V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V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데이디 파취	- JSP 2.x	abla									
데이터 표현	- ASP.net				V						
	- PHP				abla						
	- 기타 (										
	o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 C				V						
	- C++				V						

7 H	항 목		덕용계	획/결	라	부분적용/		
구 분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Java	abla						
	- C#				V			
	- 기타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V						
	- SOAP 1.2				V			
데이터 교환	- API							
	o 문자셋							
	- EUC-KR				V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V						

### ◇ 보안 분야

			성용계	획/결기	라	부분적용/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 적용	마점용	해당 없음	미적용시 시 유 및 대체 기술
	기본 지침					
하고 "서!	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이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터페이스 및 통합"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V				
	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abla	
 기능	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V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법	V				
관련 규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V				
., 0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V				

	항 목		<b>부용계</b>	부분적용/						
구 분			부분 적용	왕미	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 유 및 대체 기술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V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checkmark$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abla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V					
	- 메일 암호화 제품				$\checkmark$					
	- 구간 암호화 제품	$\checkmark$								
	- 하드웨어 보안 토큰				$\checkmark$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checkmark$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abla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checkmark$					
제품별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 경두	보인	·적합	성 검	증 필요)				
도입	- (네트워크)침입차단				abla					
요건 및 보안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V					
기준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abla					
준수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V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V					
	- 인터넷 전화 보안				V					
	- 무선침입방지				V					
	- 무선랜 인증				V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V					
	- 네트워크 접근통제				V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V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V					
	- 패치관리				V					
	- 스팸메일 차단				abla					
	- 서버 접근통제				V					

		즈	<b>부용계</b>	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 적용	鸣	해당 없음	유 및 대체기술
	- DB접근 통제				abla	
	- 스마트카드				V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abla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abla	
	- 스마트폰 보안관리				V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abla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 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abla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abla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abla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abla	
	- 망간 자료전송				abla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abla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abla	
	- 가상화관리제품				abla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abla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abla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V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abla	
백도어 방지	o 보안기능 준수					
망시 기술적	- 식별 및 인증	abla				
확인	- 암호지원				abla	

[붙	임	1	2
----	---	---	---

적용계획/결과

V

 $\checkmark$ 

V

V

 $\checkmark$ 

 $\checkmark$ 

 $\checkmark$ 

 $\checkmark$  $\overline{\mathsf{V}}$ 

 $\checkmark$ 

 $\checkmark$ 

구 분

사항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감사 기록

- 전송데이터 보호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항 목

미적용시 사

## 과업심의위원회 결과서

####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불임4

### 과업내용 (확정) 위원장 심의결과서

사업	명	2025년도 서울관광 은라인 서비 스 문영 및 유지보수	발주부서	서울관광재단 스마트관광림
추진	확정 심의	[√] 발주 전 [ ]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0.
단계명	변경 심의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해당없음
제	목	2025년도 서울관광 온	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심의일	실 자	2024년 12월 16일	심 의 장 소	서면심의
심의	결 과	[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등	승인
건투의견1				

- 귀 기관에서 추진중인 서울관광온라인서비스 운영 유지보수(해당사업내 전체 운영 유지 보수와 서울관광 아카이브 재구축 및 서울관광 API 개발자 센터 구축 건) 제안요청서를 검토한 바, 과업에 대한 용역 사업기간이 적절하게 산절되었으며 제안요청서상 기관에서 필요한 구성항목과 상세 요구사항들이 모두 적정하게 기술한 것으로 판단되며
- 각 부문별 산출내역서의 사업비 FP산정방식을 면밀히 검토한 바, 당초 예타심사결과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 보이나, 해당 용역사업을 발주함에 있어서 부문별 예산규모와 사업기간이 적합하게 신정된 것으로 판단됨

소프트웨어진홍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내지 제28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16일

위원장김성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

불입4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 과업내용 (확정) 위원 심의결과서

사업	명	2025년도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 스 문영 및 유지보수	발 <mark>주부</mark> 서	서울관광재딘 스마트관광팀
추진	확정 심의	[√] 발주 전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단계명	변경 심의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해당없음
제	목	2025년도 서울관광 온태	라인 서비스 운명	및 유지보수
심의일	사	2024년 12월 16일	심 의 장 소	서면심의
심의걸	별과	[ √ ] 승인 [ ] 불가	[]조건부	승인

#### [검토의견]

#### □ 과업내용 검토 : 원안대로 승인

ㅇ (승인사유) 제안요청서 요청범위 및 내용 검토 결과 「소프트웨어 사업 요구사항 분석 적용 가이드」기준에 따른 요구사항 항목 및 표준 양식에 맞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됨

#### □ 소요예산 적정성 검토: 원안대로 승인

o (승인사유) S/W 개발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준용하여 기능점수 방식에 따라 2024년 소프트웨어 기능점수 단가 605,784원으로 적정하게 선정하였으며, 유지보수 요율은 전년도(2024년도) 대비 평균 약 0.88% 감소 하여 산정함

#### □ 적정사업기간 검토: 원안대로 승인

ㅇ (승인사유) 사업기초자료 등의 검토 결과, 연간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사업 기간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확인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내지 제28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16일

위 원 김종배

발주기관의 장 귀하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 과업내용 (확정) 위원 심의결과서

사업	명	2025년도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 스 운영 및 유지보수	발주부서	서울관광재단 스마트관광팀
추진	확정 심의	[√] 발주 전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단계명	변경 심의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해당없음
제	목	2025년도 서울관광 온태	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심의일	실 자	2024년 12월 16일	심의장소	서면심의
심의걸	결과	[] 승인 [] 불가	[ ]조건부 승인	<b>I</b> k

#### [검토의견]

- ※ 심의대상 소프트웨어사업 수에 따라 검토의견 등 심의결과는 별지 작성 가능함
- 2025년도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예산 및 기간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함.

소프트웨어진홍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내지 제28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16일

(서명) 위 원 이승은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

#### 불임4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 과업내용 (확정) 위원 심의결과서

사업명		2025년도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 스 문영 및 유지보수	발주부서	서울관광재단 스마트관광팀
추진	확정 심의	[√] 발주 전 [ ]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353
단계명	변경 심의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해당없음
제	목	2025년도 서울관광 온	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심의일	일 자	2024년 12월 16일	심 의 장 소	서면심의
심의길	별과	[v] 승인 [ ] 불가	[ ]조건부 승인	

#### [검토의견]

산출내역서 및 산출 근거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유지 보수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 와 개발 및 고도화에 대한 비용이 적절하게 분배되고 산정됨에 따라서, 2025년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에 적합하다 판단됩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내지 제28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16일

위 원 김예란 나

발주기관의 장 귀하

#### 불일4

#### 소프트웨어 과언내용 심의결과서

### 과업내용 (확정) 위원 심의결과서

사업명		2025년도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 스 운영 및 유지보수 발주부서		서울관광재단 스마트관광팀
추진	확정 심의	[✔] 발주 전 [ ]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단계명	변경 심의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해당없음
제	목	2025년도 서울관광 온	e라인 서비스 운명 및	유지보수
심의일	과	2024년 12월 16일	심 의 장 소	서면심의
심의길	결과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Į

#### [검토의견]

- 1) SW과업내용(상세 요구사항)과 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 심의대상 사업의 과업내용과 산출내역서 검토 결과 "정보시스템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에 요구되는 적정한 범위의 과업과 예산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함
- 2) 적정사업기간의 산정에 관한사항
- 예산규모, 산출내역, 요구사항, 사업기초자료 및 상기 과업의 유사사업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기간이 적정하게 산정되었음을 확인함
- 3) SW영향평가의 적적성에 관한사항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 본 사업은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 유지 관리를 요하는 사업으로 공공성과 필요성이 명확한 과업임.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는 적정하게 검토되었다고 판단됨

소프트웨어진홍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내지 제28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16일

别 包 이 주 용 人 年春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조프	particular by have reported to	업 영향평가			
	사업명		도 서울관광 온라인			
	영합평가단 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	묘시	■ 사업됩	7	
	주요 내용	2025년도 사	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뮤지보수		
	사업기간 (또는 2024 년 2 월 ~ 2024 년 12 월 개발가간)					
		① 상용 소트	트웨어의 구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1. 기본정보		<ul><li>② 국가안보 부적합된</li></ul>	, 치만, 외교 등 민 · 사업	간이 서비스하기에		
		③ 민간투자	형 소프트웨어 사업			
	구분	Dec. No. and Children	내부(소속기관 제외 소프트웨어 시업	) 직원을 대상으로	Ü	
		⑤ 데이터베	이스 구축 사업			
			어 변경이 없는 운영시	사업		
		① コ 의 소	포트웨어 사업			
		The second second second	이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함독 작성 불필요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애삼 : 개 기관)			
2. 운영계획		1.7		예상 사	예상 사용자수	
	사용자	■ 내부 직원			105	
	(복주선택 가능)	□ 타 기관・			9	
		■ 일반 국민		The second secon	,500,0009	
3. 민간	子3/15	과 중월 귀사인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 있음 □ 및		1 1919	
소프트	# 「없음」에 B	#당하는 경우 3	번 이라 항목 및 4번 항	목 작성 불필요		
웨어	주요	기능	동일·유사	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침해	0					
가능성	D					
	-	1				
4.사업의필요 성 - 공공성 검토	□ 사업을 통	1 : 대 활용 공공시 한 민간 소프!	서비스 제공 및 정비 : 트웨어 시장 활성화 7 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이	104*	이터 연계표	
			장기 민간 이랑 계획 등			
(복수선택가	(기여 방인					
능)	(부적함 시	위 :	소프트웨어를 제공하	기에 무직할		
- material			침해 가능성 없음	alai ina wai		
5. 종합의견			침해 가늠성을 최소화	아버 사업 우십	DEMONSTRUCTURE OF THE PARTY OF	
	(추진 방인	P.I.			ESE EST	
			atalas - vas	2024년 #15 )서울관광제단 #13		
			기관병 (제	)서울판광제단 #건물 210m ×25m(	A PARTY	
				5100m v 52 mm()	British Stored Table of	

### [붙임14]

###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서울관광재단 스마트관광팀(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용역수행사업자 (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 영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위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정의 된 바에 따른다.
-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도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1.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보유 개인정보 일체
-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5년 12월 31일
- 제5조 (재위탁 제한)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 ②"수탁자"가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수탁자"는 해당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 완료 후 수탁계약을 하여야 한다.
-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

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20○○년 ○월 ○일

<위탁자> 서울관광재단 길기연 대표이사

○○회사 ○○○ 대표이사

<용역수행사업자>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 관리 체크리스트

◎ 위탁업무명 : 2025년도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 업체명(수탁자명) : ㈜000회사(예시)

◎ 점검 일시 : 2025.00.00.(예시)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결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계약서 상 명시 및 인지 여부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준수 및 인지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사항 준수 여부	
수탁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누설 및 이용·제공 금지 등 금지행위 준수 여부	

◎ 위탁관리부서 : 본부 팀 담당자 : (서명)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00111					
교육일시	0000년 00월 00일				
교육장소	서울특별시청 소회의실		교육강사	홍길동	-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참석자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교 육 명	000시스템 수탁자 대상 개인정	]보보호 교	육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수집 항목 : 정보주체 동의 - 수집 목적 : 000시스템 호 - 보유 기간 : 수집 목적 당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처리정 ○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	<i>메일주소()</i> <i>메일주소()</i> <i>메일 한수</i> <i>리고인, 대급 성 시(예시</i> 집 시 동의 파기 및 처 렇치 등 정보	<i>'예시)</i> <i>집(예시)</i> <i>금 청구(예시)</i> ) 절차 및 동의서 리제한에 관한 セ주체의 권리보	사항 장에 관한 사항	
교육내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역 기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 기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 기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비 백시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이 압호로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압호로 기간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기 기준 및 방안 기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기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용 PC 등에 한 3년 이 록 6개월 적용 나이오정보, 로그램 설치 다 등 안전 호 방법 법 위한 물리 의 처리제호	상 보관 및 점조이상 보관 민감정보 암호 민·운영 조치 방법 적 안전조치 방 나에 관한 사항	설 화 관리 법	
기타사항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I.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 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① 하수급인의 최 ※ 하도급 계약금	근 3년간 유사사	언 수행식적		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 80%이상	80%미만 ~ 60%이상	60%미만 ~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 ~ 16점	15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③ 하도급 사업 투 비율	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4	수행에 1건 이상 침	남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	
(재)하수급인 의	(30 a)	(30 🛮 )	70%이상	70%미만 ~ 60%이상	60%미만 ~ 50%이상	50%미만 ~ 40%이상	40%미만
사업소행		30점	28점	26점	25 ~ 16점	15점	
사업수행 능력 (40점)		* 계약상대자는 * 증빙서류 미	· ①, ⓒ 중 택일 제출 및 제출한 /	하여 판단요청 기 서류로 사업수행실	'능 실적이 증빙되지 (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 1.「고용보험법」 2. 파견근로자의 체 소속 확인 3.「고용보험법」	입인력 전원의 고 제15조에 따른 시「파견근로자보호 민 및 고용보험 기 세10조에 따라 고용 우 사업자 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등 고용보험 가입 . 등에 관한 법률 1입 보험법이 적용되지	관련법 준수 여름 - - - - 에기조에 따른 - 않는 인력의 경우	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 이를 <del>증명</del> 하는 서류	

### Ⅲ. 계약의 공정성

	하도급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①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④ 지급시기, ⑤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⑦불일치 (④,��일치 여부 -	(3), 구관) 전투	(4), (9) 보일지	⑦는 일치하고 ④, ④ 중 1개 일	. @ 	⑦는 일치하고 ④, ④ 전부 불일치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0점	3	0점	15점		0점	
(재)하도급 계약방식	석성성 (30점)	또는 제13 ※ 원도급 시	3조에 따른 적	법한 기일(15일 금 지급방식보	! 또는「하도급 일) 이내 지급시 다 하도급 계약 †주	기를 결정한		· 간주
(60점)	하도급	② 원도급의 ਰ	하도급예정액 디	H비 하도급계9	<del>[</del> 금액의 비율(누	<sup>보</sup> 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 90%이상	90%미만 ~ 85%이상	85%미만 ~ 80%이상	80%미만 ~ 70%이상	70%미만	
	금액의 적정성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직성성 (30점)	2. 하도급예	정액 : 국가기 하도급	관등과 수급( 되는 예정금의	하도급예정액) 인간 계약서(산 백 계약서상의 명시	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 Ⅳ. 기타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 (가점    2점)
기타	가 점 (최대 5점)	* 소모'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S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 시스템인증(CC), 각/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 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 [별지서식 1]

## 제안사 일반현황

###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달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달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 □ 조직도

L		

### □ 인원현황

구 분	계	IT프로젝트 관리	IT서비스기 획	응용SW개 발	데이터베이 스관리	
계						
5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1년미만						

<sup>\*</sup>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 [별지서식 2]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단위: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	0 년	힡	<b>취</b>	평	균
	자본	п									
		BPR/ISP									
	리서티	전략컨설팅									
	컨설팅 부문	보안컨설팅									
	一世	감리									
		기타									
매출액	상용	용 S/W 부문									
7127	F	l/W 부문									
	시스!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 (자기자본	비율  /총자산)									
( <del>S</del>	유 동 t 유동자산/유	비 율 유동부채)									
				신용	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			등급평	령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1				등급유효	기간			
	기업신	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sup>\*</sup>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어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 여하는 부서를 표시

<sup>2.</sup>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또는 홈페이지 구축 사업'** 의 준공 실적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완료일	202 ~ 202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	등요사항 및 =	수행한 업무내용		

^	[집절식당경전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료 일자	

###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6. 사업 내용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

[별지서식 5]

## 용역책임자(PM)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	직	책		연 령	만	세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		ľ	TSQF(IT	「분야역량체 <i>?</i>	ᅨ) 직무별 근	무처 경력	ᅾ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	기간			참여율		%

	기술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 주)1. 실제로 과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 5. ITSQF직무 및 ITSQF 직무별 근무처 경력과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 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내용으로 증명한다.
-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등으로 표기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 [별지서식 6]

					입 찰 참 가	신청	정 서		처리	시간
*	아래	사형	· 중	해당	되는 경우에는 기재하	하시기 바	랍니다.		즉	시
신	상호	또는	법인	l명칭			법인등록번호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인	대		Ŧ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진	찰 명)	공 번	고 호			입 찰 일 자			
개 요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면제	ᅦ 및	지급 약	본인은 낙찰 후 계 해당하는 입찰보					00에
	대리( 나용인	_			에 관한 일체의 권한: 나에게 위임합니다. 명 :		본 입찰에 사용 신고 합니다.	할 인감을 다음	음과 같	0
		_		l등록	번호 :		사용인감 :		@	D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 2. 인감신고서 1통
-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u>(P)</u>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귀하

### [별지서식 7]

					가	7	격	입	찰	서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	일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면										
내 용	금			액										
	준공	B(납플	품)년{	월일										
입	상호	또는	법인	<u>l</u> 명칭					법인등	록번호				
발 찰 자	주			소					전 화	번 호				
	대	Ī	£	자					주민등	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제출합니다.

붙임: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8 참고)

입찰자 : 연

20 년 월 일

###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귀하

	•	가 격 기	데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칭:

주 소: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서식 9]

##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2025년도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2025년도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 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 자로 선정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5년 월 일

기 관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재)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서식 10]

계약상대자용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2025년도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재)서울관광재단 및 서울특별시 등(이하 (재)서울관광재단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자는 (재)서울관광재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재)서울관광재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재)서울관광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재)서울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청렴음부즈만,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음부즈만 및 시민참여음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6.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 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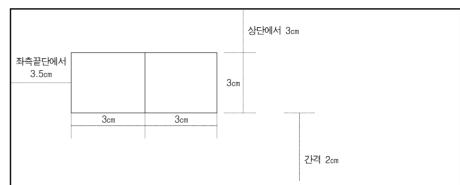
-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서울관광재단 및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서울관광재단 및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 [별지서식 11]

##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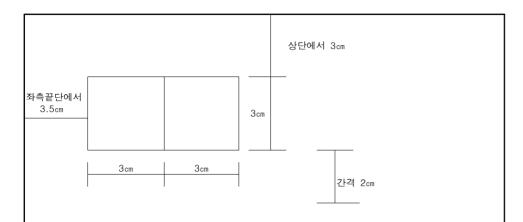
2025년도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 기 술 제 안 서 -

#### ※ 글씨 크기

□ ○○○○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sup>※</sup> 옆면 표지는 'OOOO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2025년도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 제안 요약서 -

※ ○○○○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별지서식 12]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5년도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작성일	

###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нг	o 국가정보원법
법률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ο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ο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ο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7.11 E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고시 등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17/120-2011-2:11/

구분	항 목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ο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성용계	획/결:	과	부분적용/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 적용	呼噜	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있도록 표준	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관련규정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항 목		성용계:	획/결:	과	부분적용/
구 분			부분 적용	呼号	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외부 접근 장치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IPv4					
프로토콜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즈	덕용계	부분적용/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하고, 개발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탄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l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서비스 통합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덕용계	부분적용/		
구 분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Z	덕용계	획/결기	라	부분적용/				
구 분	항 목		부분 적용	마점용	해당 없음	미적용시 시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방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수행하는 임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네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네트워크	- H.323									
	- SIP									
	- Megaco(H.248)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운영체제 및	- Windows Server									
기반 환경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덕용계	획/결과	<b>과</b>	부분적용/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 적용	呼略	해당 없음	미적용시 시유 및 대체기술
	o DBMS					
	- RDBMS					
	- ORDBMS					
데이터베이스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laaS					
클라우드 컴퓨팅	o PaaS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7 8	*1 -		덕용계	획/결기	라	부분적용/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ο 응용서비스	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말한다)로 「공공데이터 별도 테이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를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o 행성성모의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 표준 등록을							
과의 연계를	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 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H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데이터 표현	- ASP.net						
	- PHP						
	- 기타 ( )						
	ㅇ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 C						
	- C++						

구 분	항 목		덕용계	부분적용/					
十 世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Java								
	- C#								
	- 기타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데이터 교환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	- <b>-</b> ·									
			용계	획/결크	라	부분적용/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 적용	마점용	해당 없음	미적용시 시 유 및 대체 기술				
	기본 지침									
하고 "서!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_	r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사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기능	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법									
관련 규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0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즈	부용계:	획/결	라	부분적용/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 적용	鸣	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 유 및 대체 기술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제품별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도입	- (네트워크)침입차단										
요건 및 보안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기준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준수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즈	덕용계	부분적용/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 적용	마점용	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 유 및 대체 기술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_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 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오 지교규들 증시(에세세에에 모음, 지교사증 기능에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o 보안기능 준수					
망시 기술적	- 식별 및 인증					
확인	- 암호지원					

		즈	성용계	획/결기	라	부분적용/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 적용	鸣	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 유 및 대체 기술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사항	- 감사 기록								
VI 8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sup>※</sup>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13]

##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수용	THOLE LING	제안서
연 번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u> </u>					

-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또는 X 로 표기

### [별지서식 14]

##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 [별지서식 15]

##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시	나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계 (단위: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천원)		
A. 수행실적 금액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B. 수행실적 건수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C.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사채에 대한 용평가등급		위에 대한 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D. 기술 및	- ,		기술 및 품질인증명		기술 및 품	들질인증 점수		
품질인증	기술 및 품질인증 건수		TE A BELOO		12 X E			
E. 하도급	하도급계약 적정성	7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계약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가평가점수			
계약 적정성	판단결과							

####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 3.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서식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 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 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0 0 0 회사 대표 0 0 0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7]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5년도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위 임 장

	성 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 소		
	회사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연락처	
	직 위	(휴대전화)	

귀 재단에서 시행하는 「2025년도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5. . .

응모 대표자: (인)

## (재)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귀하

- ※ 지참서류: 재직증명서, 명함, 신분증
-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응모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 대리 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서식 19]

##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주소:

대표자:

(인)

(재)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귀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본인은 서울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도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입찰 참가를 위하여 아 대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 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여권번호),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경력, 학력	입찰 절차 진행 및 낙찰자 선정 과정에 필요한 정보 확인	입찰참가일로부터 5년		

ㅇ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입찰에 참가가 제한됩니다.

본인은 서울관광재단이 상기 목적으로 본인	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사항 안내

- 수집 및 이용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9조
- 주민등록번호(또는 여권번호) 보유. 이용기간: 입찰참가일로부터 5년

###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또는 여권번호)	입찰 절차 진행 및 낙찰자 선정 과정에 필요한 정보 확인	입찰참가일로부터 3년		

- ㅇ 정보주체는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ㅇ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입찰에 참가가 제한됩니다.

본인은 서울관광재단이 상기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녆 성명: (인)

[별지서식 21]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잣	∥1조 [-	목적] 0	협정/	서는 0	h래 기	벢약을	공동	수급	테의 -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	능력
	인원	및 기자	사재를 -	동원하(	여 아	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	율에 [	다라 .	공동	연대하	여 2	ᅨ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	는 협	약을
	정함(	게 있다.												

- 1. 계약건명 :
- 2. 계약금액 :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 1. 명 청 : ○○○
- 2. 주사무소소재지 :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〇〇〇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 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 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 표-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000: %

2. 000: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 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 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 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 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OOO (인)

000 (인)

##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